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8. 14.(일) 09:30	배포 일시	2022. 8. 14.(일) 09:30
담당 부서 <총괄>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	책임자	팀 장 고재영 (043-719-7780)
		담당자	사무관 박장호 (043-719-9311)
담당 부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	책임자	팀 장 김도균 (044-202-1720)
		담당자	사무관 권고운 (044-202-1714)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8월 14일)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청장)는 8월 14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12명**(전일 대비 43명 증가), **사망자는 57명**(전일 대비 10명 감소)으로 **누적 사망자는 25,623명**(치명률 0.12%)이라고 밝혔다.

구분	8.8.	8.9.	8.10.	8.11.	8.12.	8.13.	8.14.
재원중 위중증	324	364	402	418	453	469	512
사망자*	29	40	50	59	58	67	57
입원	305	420	515	484	630	663	592

*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금일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450명(87.9%),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52명(91.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50세 이상 474명(92.6%), 사망자 중 50세 이상 56명(98.3%)

○ 8월 1주(7.31.~8.6.) 보고된 사망자 209명 중 **50세 이상은 201명(96.2%)이었으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68명(33.8%)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 50세 이상 접종대상자 중 1차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후 2차 미접종자 비율 5.7% 내외(8.1주차 기준)

구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위중증 구성비(%)	
계	57 (100.00)	25,623 (100.00)	0.12	512 (100.00)	
성별	남성	27 (47.37)	12,488 (48.74)	0.12	282 (55.08)
	여성	30 (52.63)	13,135 (51.26)	0.12	230 (44.92)
연령	80세 이상	37 (64.91)	15,068 (58.81)	2.43	251 (49.02)
	70-79	10 (17.54)	5,899 (23.02)	0.57	117 (22.85)
	60-69	5 (8.77)	3,011 (11.75)	0.14	82 (16.02)
	50-59	4 (7.02)	1,068 (4.17)	0.04	24 (4.69)
	40-49	1 (1.75)	350 (1.37)	0.01	18 (3.52)
	30-39	0 (0.00)	120 (0.47)	0.00	13 (2.54)
	20-29	0 (0.00)	65 (0.25)	0.00	2 (0.39)
	10-19	0 (0.00)	14 (0.05)	0.00	2 (0.39)
	0-9	0 (0.00)	28 (0.11)	0.00	3 (0.59)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 위험은 ‘미접종군’에 비해 96.3%, ‘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80.0%, ‘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75.0% 감소하였다.

- 6월 3주차 기준, 60대 이상 전체 인구 중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미접종군 2.7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완료군 0.4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0.1(10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 6월 3주 한주동안 분석대상 중 ‘미접종군’, ‘2~4차접종 완료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확인 이후 28일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사망한 비율임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19,143명, 해외유입 사례는 460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119,603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1,355,958명(해외유입 51,499명)이다.

○ 8월 1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19,143명(최근 1주간 일 평균 123,343.0명)이며, 수도권에서 54,746명(45.9%), 비수도권에서 64,397명(54.1%)이 발생하였다.

※ 국내 주요 발생 현황(지역별 및 권역별 확진자 현황) [붙임 1] 참고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현황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7,201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2.5%, 준-중증병상 62.1%, 중등증병상 45.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4.7%이다. (8.13. 17시 기준)

구분 (단위: 개)	위중증				준중증				중등증				경증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보유	사용	%	가용	보유	사용	%	가용	보유	사용	%	가용	보유	사용	%	가용
전국	1,790	761	42.5	1,029	3,039	1,886	62.1	1,153	2,256	1,026	45.5	1,230	116	17	14.7	99
수도권	1,218	524	43.0	694	2,040	1,381	67.7	659	1,040	491	47.2	549	116	17	14.7	99
비수도권	572	237	41.4	335	999	505	50.6	494	1,216	535	44.0	681	0	0	0	0

□ 8월 14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748,338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116,982명(수도권 55,862명, 비수도권 61,120명)이다.

재택치료 현원	신규 재택치료자(8.12.)
748,338명	116,982명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3개소 운영되고 있다.
(8.14. 0시 기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733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9,926개소(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7,723개소)가 있다. (8.13.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예약 후 방문 요망

구 분	개소수	호흡기환자 진료	코로나19 검사	치료제 처방	확진자 진료	
					대면	비대면
합 계	13,733	12,960	11,921	10,729	10,862	10,868
원스톱진료기관 외	3,807	3,034	1,995	803	936	3,145
원스톱진료기관	9,926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3. 코로나19 후유증 안내문
 4. 코로나19 후유증 Q&A
 5.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6.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②
 7. 재택치료 안내문
 8. 재택치료자 동거인 안내문
 9.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안내문
 10. 개인방역 6대 중요 수칙
 11.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2.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13. 코로나19 4차접종 안내문
 14.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포함) 안내문
 15. 코로나19 3차접종 안내문
 16. 코로나19 기초접종 안내문
 17.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문
 18.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안내문
 19. 「감염병 보도준칙」 (2020.4.28.)

붙임 1 |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1 | 지역별 확진자 현황(8. 14. 0시 기준)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국내	119,143	19,591	6,999	5,619	5,962	4,463	4,073	2,808	1,044	29,193	3,447	4,269	5,581	5,084	5,014	6,415	7,684	1,897	0
해외	460	5	9	17	109	23	39	5	5	36	16	30	18	19	12	43	31	16	27
합계	119,603	19,596	7,008	5,636	6,071	4,486	4,112	2,813	1,049	29,229	3,463	4,299	5,599	5,103	5,026	6,458	7,715	1,913	27

< '20.1.3. 이후 누계 현황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명)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19,591	5	4,264,423 (20.0)	44,844
부산	6,999	9	1,281,110 (6.0)	38,238
대구	5,619	17	892,424 (4.2)	37,412
인천	5,962	109	1,240,825 (5.8)	42,085
광주	4,463	23	620,367 (2.9)	43,033
대전	4,073	39	607,484 (2.8)	41,831
울산	2,808	5	463,816 (2.2)	41,353
세종	1,044	5	164,543 (0.8)	44,244
경기	29,193	36	5,782,202 (27.1)	42,624
강원	3,447	16	620,479 (2.9)	40,330
충북	4,269	30	657,087 (3.1)	41,134
충남	5,581	18	845,830 (4.0)	39,912
전북	5,084	19	710,430 (3.3)	39,759
전남	5,014	12	693,016 (3.2)	37,812
경북	6,415	43	933,103 (4.4)	35,525
경남	7,684	31	1,272,359 (6.0)	38,391
제주	1,897	16	294,101 (1.4)	43,457
검역	0	27	12,359 (0.1)	-
총합계	119,143	460	21,355,958 (100.0)	41,356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2 | 권역별 확진자 현황 (8. 14. 0시 기준)

(주간: 8. 8.~8. 14., 단위: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8. 14.(0시 기준)	119,143	54,746	14,967	14,561	12,034	17,491	3,447	1,897
주간 일 평균	123,343.0	59,328.1	14,430.9	13,712.4	12,022.9	17,940.7	4,111.1	1,796.9
주간 총 확진자 수	863,401	415,297	101,016	95,987	84,160	125,585	28,778	12,495
주간 발생률*	238.9	228.0	260.4	270.9	239.9	230.4	267.2	265.5

*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3 연령별 확진자 현황 (8. 14. 0시 기준)

구분	8.8	8.9	8.10	8.11	8.12	8.13	8.14
국내 확진자 수	54,782	149,282	151,141	136,691	128,250	124,112	119,143
60세 이상							
확진자 수	10,348	30,830	32,767	28,884	28,904	29,431	29,118
%	18.9	20.7	21.7	21.1	22.5	23.7	24.4
18세 이하							
확진자 수	10,296	23,182	24,246	23,071	21,783	21,680	22,033
%	18.8	15.5	16.0	16.9	17.0	17.5	18.5

4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8. 14. 0시 기준)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미확인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460	11	327	73	38	0	11	0	27	433	326	134
누계	51,499	624	26,978	8,877	12,151	1,769	1,100	0	12,359	39,140	31,483	20,016
		(1.2%)	(52.5%)	(17.2%)	(23.6%)	(3.4%)	(2.1%)	(0.0%)	(24.0%)	(76.0%)	(61.1%)	(38.9%)

5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8. 8.~8. 14.)

(단위 : 건, 명)

구분	8.8	8.9	8.10	8.11	8.12	8.13	8.14	주간누계	총 누계
총 검사 건수 ¹⁾	122,025	338,494	266,627	221,948	217,323	187,741	집계중	1,354,158	183,903,000
선별진료소(통합) 검사 건수 ²⁾	79,495	237,342	181,265	147,545	142,202	117,889	72,699	978,437	36,688,422
신규 확진자 수 ³⁾	55,262	149,866	151,748	137,204	128,714	124,592	119,603	866,989	21,355,958

1) (총 검사 건수)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PCR 검사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등

2) (선별진료소(통합) 검사 건수) 선별진료소(통합) PCR 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수치

3) (신규 확진자 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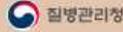
붙임 2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8. 13. 17시 기준, 단위: 개)

구분	危重症			準-重症			中等症			무증상·輕症			
	중증 병상			준-중증 병상			중등증 병상			생활치료센터			
권역	시도	보유	사용	가용	보유	사용	가용	보유	사용	가용	보유	사용	가용
전국		1,790	761	1,029	3,039	1,886	1,153	2,256	1,026	1,230	116	17	99
수도권	소계	1,218	524	694	2,040	1,381	659	1,040	491	549	116	17	99
	중수분										116	17	99
	서울	245	105	140	374	248	126	268	112	156	0	0	0
	경기	615	269	346	1,086	797	289	421	215	206	0	0	0
	인천	358	150	208	580	336	244	351	164	187	0	0	0
강원	소계	46	28	18	39	20	19	74	30	44	0	0	0
충청권	소계	114	52	62	190	86	104	451	191	260	0	0	0
	권역(중수분)										0	0	0
	대전	37	21	16	48	33	15	319	150	169	0	0	0
	세종	6	2	4	5	1	4	0	0	0	0	0	0
	충북	41	16	25	39	11	28	102	41	61	0	0	0
	충남	30	13	17	98	41	57	30	0	30	0	0	0
호남권	소계	168	56	112	236	137	99	303	152	151	0	0	0
	권역(중수분)										0	0	0
	광주	44	21	23	58	43	15	45	22	23	0	0	0
	전북	98	26	72	130	70	60	95	42	53	0	0	0
	전남	26	9	17	48	24	24	163	88	75	0	0	0
	제주	소계	88	34	54	201	115	86	127	51	76	0	0
전남권	소계	134	63	71	299	139	160	219	100	119	0	0	0
	권역(중수분)										0	0	0
	부산	63	35	28	49	31	18	48	24	24	0	0	0
	울산	35	5	30	133	45	88	109	40	69	0	0	0
	경남	36	23	13	117	63	54	62	36	26	0	0	0
제주	소계	22	4	18	34	8	26	42	11	31	0	0	0

붙임 3 | 코로나19 후유증 안내문

2022. 5. 3.



코로나19 후유증 안내문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 자료는 2022년 5월 3일 기준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과학적 근거에 의해 밝혀지는 지식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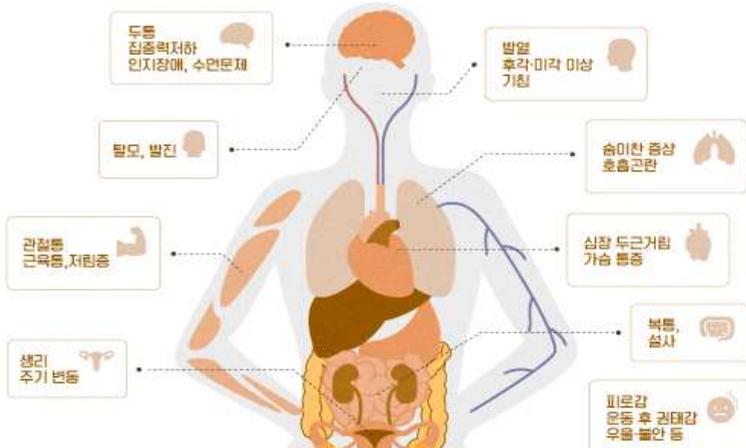
1. 코로나19 후유증이란?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코로나19 발병 3개월 이내에 시작되어 최소 2개월 이상 증상이 있으면서, 다른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를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WHO, '21.10.6)

* 국가별 코로나19 후유증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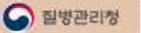
- (미국) 4주 이상 유지되는 증상이 코로나19 감염 이후 지속 또는 재발하거나 새롭게 발현되는 경우
- (영국) 코로나19 완치 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증상이 나타나는 것.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는 12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하지만, 일부에서는 8주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간주하기도 함
- (독일)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되어 일상 기능 및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위해
- (호주) 수 주 혹은 수개월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감염 이후(보통 4주 후) 장기간 증상이 남아있거나 악화되는 것

- 일반적으로 피로감, 호흡곤란, 우울·불안, 인지 저하 등 200개 이상의 다양한 증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 출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1.9.16.

2022. 5. 3.



2. 코로나19 후유증의 지속기간

- 코로나19 후유증의 지속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WHO에 따르면 확진자 대부분은 완전히 회복하지만, 약 10~20%의 환자는 감염 초기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다양한 증상을 중장기적으로 경험합니다.
 - 이는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초기 증상의 중증도 및 입원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 후유증의 치료

-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법은 현재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 코로나19 후유증의 완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며, 코로나19 감염 후 새로 나타나거나 지속되는 증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불안, 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가심리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심리지원센터

- 정신건강센터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 <http://www.ncmh.go.kr>
- 근로자 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 <http://www.kosha.or.kr/kosha/business/healthcenter.do>

4. 코로나19 후유증의 예방

- 코로나19 후유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감염관리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5.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

-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증상이 지속되더라도 감염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붙임 4 코로나19 후유증 Q&A

2022.5.13. 질병관리청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

코로나19 후유증 바로알기

1/9

2022.5.13. 질병관리청

Q1. 코로나19 후유증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해 국내에서 조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의 목적, 대상자, 조사기간에 따라 다양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폐렴과, 호흡곤란, 우울·불안, 인지 장애 등 초기에 발생한 다양한 증상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일일에는 신장, 혈 소변, 피부, 뇌기능과 관련된 영향을 받는 장기 증상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 출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Post-COVID-19 Condition (2022.5.13)

2/9

2022.5.13. 질병관리청

Q2. 국내외 연구 결과

○ 국내외 연구 결과 비교

- 국내 연구 결과: 폐렴, 호흡곤란, 인지 장애, 우울·불안, 피로, 두통, 식욕 부진, 기침, 인지기능 장애, 후각·미각 장애, 청각 장애, 피부 증상, 신장 기능 장애, 뇌기능 장애
- 외국 연구 결과: 폐렴, 호흡곤란, 인지 장애, 우울·불안, 피로, 두통, 식욕 부진, 기침, 인지기능 장애, 후각·미각 장애, 청각 장애, 피부 증상, 신장 기능 장애, 뇌기능 장애

○ 그 외 Necessary T 등 연구에서는 숨가쁨 또는 호흡곤란, 피로 또는 정신(attention), 수면장애 또는 불안정성이 다른 증상으로 확인

* 출처: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DCDC) (2022.5.13)
 * Prevalence of ongoing symptoms among COVID-19 convalescents in Korea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2.4.7)
 * Most Post-COVID-19 Symptoms are Mild and Resolving (Lancet, 2022.1.13)
 * Assessment of Post-Pandemic Syndrome in Post-COVID-19 Convalescents (JAMA Network Journal, 2022.1.13)

3/9

2022.5.13. 질병관리청

Q2. 코로나19 후유증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증상 지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확진자 대부분은 완전한 회복하지만, 약 10~20%의 환자는 주요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다양한 증상을 중증·지속적으로 경험한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후유증의 증상 지속 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내외 연구결과 코로나19 감염력 있는 환자 대상 후유증 114일간 67일 지속되다

* 출처: 질병관리청 (2022.5.13) (2022.5.13) (2022.5.13)

4/9

2022.5.13. 질병관리청

Q3.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또는 경증 환자도 후유증이 생길 수 있나요?

○ 코로나19 감염 후 무증상 및 경증일지라도 환자도 회복 이후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국내, 대만 코로나19 후유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무증상 환자로도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대만에서는 전이되는 경우가 관찰되었습니다.

○ 한편, 코로나19 감염 소아에서 드물게 약 0.02~0.31%의 코로나19 연관 소아-형상신증(CA) 관련 증후군(MS-C)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 연일에는 37개월~20세 사이는 코로나19 감염 2~4주 후에 발생하며, 발열, 소변기계 증상(배변, 설사, 구토 등), 발진 등의 증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 출처: WHO (2022.5.13), WHO (2022.5.13) (2022.5.13) (2022.5.13) (2022.5.13)

5/9

2022.5.13. 질병관리청

Q4. 소아 및 청소년도 코로나19 후유증이 있을 수 있나요?

○ 소아 및 청소년도 코로나19 감염 이후 상인과 유사한 경증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 국내, 대만 코로나19 후유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무증상 환자로도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대만에서는 전이되는 경우가 관찰되었습니다.

○ 한편, 코로나19 감염 소아에서 드물게 약 0.02~0.31%의 코로나19 연관 소아-형상신증(CA) 관련 증후군(MS-C)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 연일에는 37개월~20세 사이는 코로나19 감염 2~4주 후에 발생하며, 발열, 소변기계 증상(배변, 설사, 구토 등), 발진 등의 증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 출처: WHO (2022.5.13), WHO (2022.5.13) (2022.5.13) (2022.5.13) (2022.5.13)

6/9

2022.5.13. 질병관리청

Q5. 코로나19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보고는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증상을 특화하기 어려우며 환자마다 개인적인 치료법이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증상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 단계에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증상이 따른 대응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7/9

2022.5.13. 질병관리청

Q6.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코로나19 후유증의 증상 발생 또는 완화에 도움이 되나요?

○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코로나19 후유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것이 가장 큰 후유증 예방법입니다.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고, 감염 발생 시에도 경증 및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는 증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영국에서 코로나19 감염 전 예방접종을 받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의 효과에 대해 분석한 중재 연구 결과, [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미접종자에 비해 후유증 증상이 나타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출처: WHO (2022.5.13) (2022.5.13) (2022.5.13) (2022.5.13)

8/9

2022.5.13.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후유증,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9/9

붙임 5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질병관리청 | 갱신일: 2022.8.1. | 최신 정보를 바로 확인하세요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확진자 | 공동안내문

귀하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빠른 대응을 바라며, 확진자의 격리 및 치료와 동거인의 권고준수사항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 안내문은 확진자에게만 통보되오니, 동거인에게도 아래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 ! 치료안내
-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 ▶ 증상이 있을 때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진통해열제, 호흡감기약 등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치료제는 ①주사제(베클루라주)와 ②먹는치료제(팍소비드, 라게브리요)가 있음
 - ▶ 코로나19 치료제는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 가능합니다. * (먹는치료제) 의과에 해당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처방 가능
 -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비대면) 및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비대면)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코로나19 누리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 ! 격리안내
- 검체채취 후 결과 확인시까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확진자에 대한 법정격리기간은 통지일(양성 확인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이며 집(생활치료센터, 의료기관)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격리해제 시점은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00)입니다.
- * 본인진료 및 처방약 수령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
 ①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 방문 ②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③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④ 도보, 자차 또는 방역택시 사용 ⑤ 진료 및 약 수령 후 즉시 귀가
- ▶ 감염예방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 하세요. * 격리후 위반 시 감염예방법에 따라 형사 고발 및 처벌 가능
 - ▶ 격리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권고
출근, 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대중이용시설, 감염취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 본 안내문은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이 공유하여 권고사항 준수에 협조 바랍니다.

붙임 6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②

질병관리청 | 갱신일: 2022.8.1.

최신 정보를 바로 확인하세요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②

*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동거인 공통안내문



권고준수기간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60세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 검사 권고

권고수칙

- 동거인은 확진자의 확진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생활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1.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 PCR검사*를 받으세요.
2.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세요.

건강관리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1.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C),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2.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1577-0199, 24시간운영)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에 문의하세요.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붙임 7 재택치료 안내문

질병관리청 | 갱신일: 2022.8.1.

최신 정보를 바로 확인하세요



재택치료 안내문

*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건강관리

- 1.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찰하세요.
2. 필요 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비대면) 및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비대면)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대면진료 및 전화 상담·처방 안내

- 1.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전예약 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2. 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간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4. 숨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등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비대면 진료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5. 돌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1577-0199, 24시간운영)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 관련 증상

- 1.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2. 숨쉬기가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3.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는 경우
4. 손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에 문의하세요.

붙임 8 재택치료자 동거인 안내문

질병관리청 **경신일: 2022.8.1.**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안내문

*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권고준수기간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60세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 검사 권고

10일간의 권고수칙

- 1. **3일 이내 PCR검사를 받으세요. PCR 검사 후 음성 확인시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합니다.**
 - *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 (진찰료, 본인 부담 발생)
- 2. **이후에도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여 주시고,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 ①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②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③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 3. **6~7일차에,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
(자가검사 또는 유통상시 검사시행 의료기관 방문 등)
 - * 전문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름

가족 간 전파 예방

- 2.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합니다.**
 -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KF94(또는 동급)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을 자주 실시합니다.
 - *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상시 가동

건강 관리

- 1.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평소 이용하시는 병·의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으도록 합니다.
 - * 진료 및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발생함
- 2.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합니다.**
첫 재택치료자 및 다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공동격리자로서의 격리

- 2.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1인 원칙)에 대하여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격리해제 후 신청시 소급적용 안됨

☑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붙임 9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안내문

질병관리청

22.08.12.
13-1번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 우선순위 검사대상별 증빙자료

우선순위 검사대상	증빙자료 예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대상 지정 문자(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및 원장(유치원, 어린이집) 확인서* 등
격리대상 접촉자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감염취약시설(3종):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해외입국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에 한함	입국심사확인증(법무부 발급), 입국자 안내문(검역소 발급), 항공권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참가: A1-3, D1-10, E1-10, F1-4, F6, H1-2, G-1 ▶ 단가: B1-2, C, C3-4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입영 장정	입영(소집)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에 한함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지침(교육부), 어린이집용 코로나19 대응지침(복지부)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붙임 10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한

질병관리청
2022. 4. 26.

-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수칙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 수칙3** 흐르는 물에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 수칙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수칙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 수칙6**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붙임 11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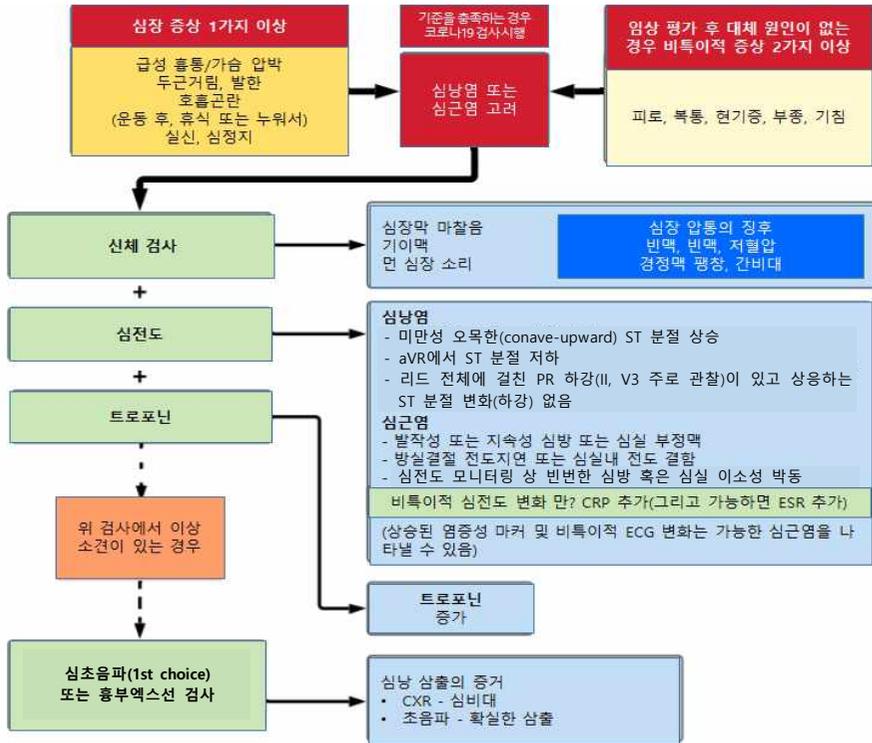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의 4차접종을 권고합니다.
 -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는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3차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 이후 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 특히,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나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합니다.
2.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와 사전예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

고 위험 군 기저 질환	면역저하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성폐질환: 천식,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 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만성신경계질환: 치매,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간질 ▶자가면역질환: 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남포성염증 ▶뇌혈관질환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비만(BMI≥30kg/m²) ▶활동성 결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3.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서류를 지참할 필요는 없으며, 18~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 후 질환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18~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제출하면 접종기관은 예진 의사가 이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됩니다.

붙임 12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 (A) 의료진 판단하여 퇴원:
 -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 / 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징후는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 / 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 고려
- (B) 24시간 내에 반복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변화,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 (C) 다음과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변화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 (D) 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번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19 예방 접종에 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조언을 구하십시오.

붙임 13 코로나19 4차접종 안내문

2022.07.27.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의 4차접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방접종은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에 꼭 참여해 주세요.

1 접종대상

- ① 50세 이상 연령층
- ②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 ③ 18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중 3차접종 완료자

*요양병원·시설,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2 접종간격

3차접종 후 120일 이후

*개인 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유선 연락하여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당일 접종으로 접종 가능

3 백신종류 및 접종장소

mRNA백신(화이자·모더나) 또는 노바백스백신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 안전백신의 경우 보건소를 통해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확인 후 접종

4 접종방법

- ① 사전예약 사전예약누리집 또는 전화예약 (1339, 지자체콜센터) *대리예약 가능
- ② 당일접종 카카오톡, 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 (의료기관 문의)
- ③ 자체접종 자체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종사자 접종 *1~4차접종 대상자 접종 가능

※ 기타 주의사항

18-19세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해야 합니다. 만약 함께 동행하기 어렵다면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① 접종 시행 동의서와 ② 예진표를 접종대상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14 |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포함) 안내문

2022.07.27.



코로나19 백신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의
**4차접종(3차포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접종대상

- ①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 ②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중
18세 이상
2차·3차접종 완료자



2 3·4차 접종간격

- ① 3차접종
2차접종 후 90일 이후
(안센 백신은 60일)
- ② 4차접종
3차접종 후 120일 이후
*개인 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유선 연락하여 3차접종 완료
90일 이후부터 당일 접종으로 접종 가능

3 백신종류

**mRNA백신(화이자·모더나)
또는 노바백스백신**

※ 안센백신의 경우 보건소를 통해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확인 후 접종



4 접종방법

- ① 방문접종 보건소 방문접종팀 또는
시설계약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접종
- ② 자체접종 자체접종을 시행하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종사자 접종
*1~4차접종 대상자 접종 가능
- ③ 위탁의료기관접종 종사자 및 거동 가능한 입소자 대상
위탁의료기관 접종 가능

4차접종 대상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의료법 상 요양병원
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거주)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연계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 운영 기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인아동쉼터
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붙임 15 | 코로나19 3차접종 안내문

2022.07.27.



코로나19 백신의
**3차접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방접종은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에 꼭 참여해 주세요.

1 접종대상

**18세 이상 성인 중
2차접종
완료자**



2 접종간격

**2차접종 후
90일 이후**
(안센백신의 경우 60일 이후)



3 백신종류 및 접종장소

**mRNA백신(화이자·모더나)
또는 노바백스백신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 안센백신의 경우 보건소를 통해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확인 후 접종



4 접종방법

- ① 사전예약 사전예약누리집 또는 전화예약
(1339, 지자체콜센터) *대리예약 가능
- ② 당일접종 카카오톡, 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
(의료기관 문의)
- ③ 자체접종 자체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종사자 접종
*1~4차접종 대상자 접종 가능

※ 기타 주의사항

18-19세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해야 합니다. 만약 함께 동행하기 어렵다면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① 접종 시행 동의서와 ② 예진표를 접종대상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16 | 코로나19 기초접종 안내문

2022.07.27.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의 기초(1·2차)접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방접종은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에 꼭 참여해 주세요.

1 접종대상

- ① 18세 이상 성인 중 1차 미접종자
- ② 1차접종 완료자 중 2차 미접종자



18세 이상

2 1>2차 접종간격

- 8주 화이자
- 8주 모더나
- 3주 노바백스

※ 접종권고간격 초과한 대상자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접종

3 백신종류 및 접종장소

mRNA백신(화이자·모더나) 또는 노바백스백신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4 접종방법

- ① 사전예약 사전예약누리집 또는 전화예약 (1339, 지자체콜센터) *대리예약 가능
- ② 당일접종 카카오톡, 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 (의료기관 문의)
- ③ 자체접종 자체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종사자 접종 *1~4차접종 대상자 접종 가능

※ 기타 주의사항

18-19세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해야 합니다. 만약 함께 동행하기 어렵다면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① 접종 시행 동의서와 ② 예진표를 접종대상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17 |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문

2022.07.27.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의 소아·청소년접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방접종은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에 꼭 참여해 주세요.

1 접종대상

- ① 소아: 만 5-11세 (주민등록상 2017년생 생일 이후~2010년생 생일 전)
- ② 청소년: 만 12-18세 (2010년생은 생일이 지난 사람)

※ 18세 이상은 mRNA 백신(글기시)·노바백스 가능

2 백신종류

- ① 소아: 소아용 화이자 백신 코미나티주 0.1mg/mL(5-11세용)주황색
- ② 청소년: 화이자 백신 코미나티주



3 접종간격

- ① 소아: 1차→2차 8주
- ② 청소년: 1차→2차 8주, 2차→3차 3개월* (면역저하자의 경우 2개월)

※ 기본접종의 경우,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3주 간격으로 접종 가능

4 접종방법

- ① 당일접종 카카오톡, 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 확인) 등록 *SNS를 통한 잔여백신 예약은 14세 이상으로 제한
- ② 사전예약 온라인(본인 및 대리예약),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 ③ 자체접종 입원 중인 소아·청소년의 경우 입원중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

※ 기타 주의사항

- 소아의 경우 접종 안전성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가 사전에 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를 작성하고, 접종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합니다.

붙임 18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안내문

2022.07.27. 

코로나19 백신의 외국인 접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방접종은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에 꼭 참여해 주세요.

1 접종대상

- ① 소아(만 5~11세) : 1·2차접종
- ② 청소년(만 12~17세) : 1~3차접종
- ③ 성인(만 18세 이상) : 1~4차접종*

*4차접종은 3차 접종 완료한 50세 이상 또는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2 접종간격

- ① 1·2차접종 : 소아용 화이자, 화이자, 모더나 8주 노바백스 3주
- ② 3차접종 : 2회접종 3개월 이후
*안센은 1회 접종 후 2개월 이후
- ③ 4차접종 : 3차접종 4개월 이후
*안센은 2회 접종 후 4개월 이후

3 백신종류

- ① 만 5~11세 : 소아용 화이자
- ② 만 12~17세 : 화이자
- ③ 만 18세 이상 : 화이자, 모더나*, 안센**, 노바백스

*모더나는 30세 이상 권장
**안센 백신은 특수한 경우에만 접종 가능

4 접종방법

- ① 등록 외국인 : 온라인 예약, 전화예약 및 당일접종
- ② 미등록외국인 :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전화예약 또는 접종기관 방문예약
- ③ 해외에서 기초접종을 마친 외국인 : 보건소에서 해외 접종력 등록 후 예약

※ 기타 안내사항

소아·청소년의 경우 접종 안전성 및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

- 온라인 예약 사이트** : <https://ncvr.kdca.go.kr>
- 전화 예약**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지자체 콜센터 예약
- 당일 접종** : 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확인) 등록 후 당일 접종

붙임 19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과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체계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